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 및
핵심장치의 동일한 결함 발생시 안전성 인증 취소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78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567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동일한 결함 발생시 안전성 인증 취소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 (안 제 30조의7, 제31조의5)	3
2.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안 제31조의6 신설 등) ...	10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78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19.
3. 회 부 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일한 결함 발생시 안전성 인증 취소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 (안 제30조의7, 제31조의5)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은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현행	개정안
· 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⑤ (생략) <u><신설></u>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③ ~ ⑥ (생략)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u> ⑤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5(핵심장치등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은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u>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u>제31조의5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u>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며,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이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검사(적합성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¹⁾

그런데 최근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곧바로 해당 장치에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③(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①~③(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안전성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검사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핵심장치등의 제작·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장치등에 대한 결함 발생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안전성인증 취소 관련(안 제30조의7)

개정안은 2년 이내에 일정 횟수 이상의 동일한 결함 발생시 해당 장치의 제작·판매의 중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적합성검사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결함²⁾은 중대한 것부터 경미한 것까지 다양하다는 점³⁾을 고려

2) 결함의 정의에 대하여 현행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①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②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의 요건을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

할 때 결함 발생횟수만을 기준으로 인증 취소 또는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서 인증 취소 또는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함의 경중 및 발생횟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시정명령 관련(안 제31조의5)

현행법 제31조4)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3) (참고) '21.1~'24.10월간 이루어진 전기차 리콜 중 배터리 교환이 11.8%, 그 외 SW 오류가 87.9% 차지
- 4)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현행법에 따라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사등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핵심장치 등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정조치의 이행은 차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작사등에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국토교통부 의견

(안 제30조의7)

핵심장치등에 일률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결함은 중대한 것부터 경미한 것까지 다양하고, 결함은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심장치등을 교환해야 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또는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유사 입법례로 중대 결함으로 시정조치로도 개선이 안되는 경우(『대

기환경보전법」), 중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건설폐기물법」) 등에 한하여 제한적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1조의5)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핵심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부품에 결함 발생 시 제작사는 시정조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또한 시정조치 이행은 차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작사에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토록 의무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안 제31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은 인증 받은 핵심장치등의 제조사, 제품명 및 성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종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1조의6(핵심장치등 정보 공개) ① <u>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들은 인증받은 핵심장치등의 제조사, 제품명 및 성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제79조(벌칙) ----- -----.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5의2.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장치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의2. ~ 5의4. (생략)	5의3. ~ 5의5. (현행 제5호의2부터

현행	개정안
6. ~ 19. (생략)	제5호의4까지와 같음) 6. ~ 19.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사고 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계(건)
운행중	12	22	34	68
주차중	6	9	21	36
충전중	4	9	13	26
기타	2	3	4	9
합계	24	43	72	139

자료 : 소방청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제조사들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 및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구동축전지의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2월 21일 시행 예정임.⁵⁾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구동축전지의 용량

나.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전동기(이하 “구동전동기”라 한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6.>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국토교통부 의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소비자 알 권리 등 고려하여 배터리 주요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에는 동의함.

신차 판매 시 구동축전지 셀 제조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25.2.21일 시행 예정)하여 기존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에 따른 내용 중 배터리 상품명 또는 제품명은 제작사가 공정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관리번호 등으로 공개 필요성이 낮아 공개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자동차 제원표 (25. 2. 21. 시행예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자동차제원표																					
1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2	차명				6	종별															
3	형식				7	유형															
4	차대・차체형상				8	구분															
5	승차정원(명)				9	용도															
10	차량중량(kg)				()				사용연료												
11	최대적재량(kg)				()																
12	차량총중량(kg)				()				22원동기												
13	차체 제원 (mm)	길이		()				내 연 기 관							형식						
		너비		()											최고출력(ps/rpm)						
		높이		()											기통수/총배기량 (cc)						
14	하대 내측 지수 (mm)	길이						구 동 전 동 기							형식						
		너비													개수						
		높이													최고출력(KW/rpm)						
15	하대옵셋트(mm)							구 동 축 전 지							정격전압/용량(V/Ah)						
				형식																	
				개수																	
				셀의 제조사																	
16	공차 시 하중 분포(kg)	전	전축		()										연 료 전 지	형식					
			후축		()											개수					
		후	전축		()											셀의 형태					
			중축		()											셀의 주요 원료					
			후축		()											하이브리드 시스템					
17	적차 시 하중 분포(kg)	전	전축		()				23정격소비율	항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1. 일반 사항

제작자명		형 식	
------	--	-----	--

2. 구동축전지의 제원

연번	구분	항목	제원
가	생산지		
나	구동축전지 셀	셀 제작자	
		셀 형태	
		셀 주요원료	
		셀 크기 (mm)	
		셀 용량 (Ah)	
다	구동축전지 모듈	모듈 제작자	
		모듈 정격 전압 (V)	
		모듈 정격 용량 (Ah)	
라	구동축전지 외관	구 조	
		형 상	
		크 기 (mm)	
		케이스	
마	구동축전지 전기규격	정격 전압 (V)	
		작동 전압 (V)	
		정격 용량 (Ah)	
		최대 전류 (A)	
바	가스 조합률	(%)	
사	자동차 탑재 시 사항	탑재 시 개요, 설치 방법 또는 도면	
		장착 구분	
아	열관리 형식		
자	전자적 제어 조건		
차	탑재될 차종		

작성 방법

1. 가목의 생산지란에는 구동축전지가 생산되는 생산지 주소를 기재합니다.(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2. 나목의 구동축전지 셀의 셀 형태란에는 각형, 파우치형 또는 원통형 등을 기재합니다.
3. 나목의 구동축전지 셀의 셀 주요원료란에는 셀의 주요원료 구성[니켈·코발트·망간(NCM), 인산철(LFP) 등] 및 비율을 기재합니다.
4. 라목의 구동축전지 외관의 형상란에는 셀 개수 및 연결모드 등을 기재합니다.
5. 라목의 구동축전지 외관의 케이스란에는 구조, 재질 및 크기 등을 기재합니다.
6. 사목의 자동차 탑재시 사항의 장착 구분란에는 고정식 또는 교환식을 기재합니다.
7. 아목의 열관리 형식란에는 수랭식, 공랭식 또는 복합식 등을 기재합니다.
8. 차목의 탑재될 차종란에는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기재합니다.(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9.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붙임자료 참조' 로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10.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을 기재합니다.

자동차등록증(안)(발취) ' 25. 2. 21. 시행예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제작연월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 (명칭)	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 은 '구동전동기형식' 을 말합니다.

이
하
부

등록관청명 **적인**

1. 제 원

(11)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12) 길이	mm	(13) 너비	mm
(14) 높이	mm	(15) 총중량	kg
(16) 승차정원	명	(17) 최대적재량	kg
(18) 배기량 또는 구동축전지 용량	cc, (Ah), [Ah]		
(19) 정격출력	Ps/rpm, (kW/rpm), [kW/rpm]		
(20) 기통수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연료 전지 최고출력]	기통, (V), [kW]		
(21) 연료의 종류 및 연료소비율	km/L, (km/kWh), [km/kg]		
(22)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23)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24)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유의사항 : (18)~(21)에서 기재 단위는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17)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22)~(24)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구조인 자동차는 제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4. 검사유효기간

[illegible]